

【 주간포커스 】

거시건전성부담금 개요 및 기대효과

변혜원 연구위원

지난 12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경제부처 합동으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방안이 발표되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되며, 2011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단기외채가 급격히 늘어난 주된 원인이 금리재정 거래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으로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감소하여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한편 외채구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비예금 외화부채¹⁾ 잔액, 즉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금액을 대상으로 부과됨.
 - 금융기관은 외화예수금(외화예금)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장되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미지급미결제현물환, 외화파생상품부채 등 외환결제 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도 제외됨.
-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후추 검토할 예정

□ 동 방안에 따르면 첫째, 비예금 외화부채와 단기외채 비중을 고려하여 우선 은행 부문이 부과 대상기관이나 추후 업권간 형평성, 우회조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상기관 확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2010년 9월 기준으로 전 금융부문의 비예금 외화부채는 약 3,000억 달러이며, 이 중 96.2%인 2,900억 달러가 은행부문의 보유분임(여전 3.2%, 보험 0.4%, 증권 0.1%).

1) 비예금 부채란 채권발행, 은행 간 거래 등을 통해 빌린 자금을 의미하며, 개인이나 기업의 예금을 수신해서 조달한 자금인 예금성 부채와 구별됨.

-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비은행부문의 경우 27.3%인데 반해, 은행부문의 경우 61.8%로 상대적으로 높음.
- 둘째,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비예금 외화부채의 만기별로 차등화하며, 요율은 금융기관 부담정도, 해외 사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예정
- 정부는 만기에 따라 단기외채(1년 이내 만기), 중기외채(1~3년 만기), 장기외채(3년 초과 만기)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요율을 부과할 것을 검토중.
 -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담금 납부 통화는 미달러화가 될 예정임.
 - 본 부담금제도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
 - 부담금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이고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을 위탁 받아 담당할 것임.
-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한 목적은 환율의 급변동과 같은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업의 호황 등으로 인한 선물환 매도 우위로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지속됨에 외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외은지점을 통한 자본유입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험을 간과하였음.²⁾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외은지점도 외화조달 및 만기연장이 어려워지자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경험을 겪은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은행의 외화부채에 대해 지급보증 조치를 취하였고 자본확충기금을 조성하는 등 외화유동성 위기가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 지난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의 경우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거시건전성 제고, 외화부채의 구조개선, 위기대응능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위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하였다고 밝힘.
 -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외채무를 감소시키고 단기외채의 규모를 축소하여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2) 국내외금리차에서 통화스왑레이트를 뺀 값이 0보다 클 경우 외자차입을 통해 국내 국채 등에 투자하면 무위험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국가위험(country risk, 평상시 30~40bp) 이상의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생겨야 동 목적으로 외자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짐.

- 적립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화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
- o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위기 시에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외환보유액과는 구별됨.

□ 한편, 유럽에서 도입되고 있는 은행부과금은 금융구제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간에 차이가 있음.

- o 현재 은행부과금을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들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확대 억제와 재정 및 정리기금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금을 도입함.

<표 1> 주요국의 은행부과금 추진 현황

국가	대상기관	부과기준(Base)	요율	비고
영국	은행 및 은행그룹	총자산 - Tier1 - 부보예금 - 기타 부채	'11 0.05% '12 이후 0.075%	-재정확충이 목적 -12월 세법개정안 발표(은행부과금 포함), 내년 1월부터 시행
독일	은행	비예금부채	0.02~0.04%	-정리기금 설립 -12월 은행구조조어법안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프랑스	은행	위험가중자산	0.25%	-재정 확충이 목적 -내년 1월부터 시행
스웨덴	예금수취기관	부채	'10 0.018% '11 이후 0.036%	-정리기금 자원 마련이 목적 -작년 12월 은행부과금 도입, 금년부터 시행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방안」, 2010.12.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금리재정거래 유인 지속이 우리나라 외채를 확대시킨 주요인이었다는 점에 이번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은 금리재정거래 유인을 축소시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낮추고 외채구조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o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선물환 매도 등을 통해 헷지(hedge)하나 수입기업은 동 위험을 헷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비대칭적인 행태를 보임.

- 이로 인해 선물환 매도 우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금리재정거래 유인도 발생
-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만큼 재정거래 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한 외자유입이 줄어들 것이며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특히 외은지점의 이익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등의 목적으로 외자를 도입하는 경우 조달비용이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부과요율이 전부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부과요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KiRi